

담 당	BOM	심사역	영업점장

보관어음 수탁약정서

본인은 지급제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수표 등(이하 “어음”이라 한다)의 보관을 귀행에 위탁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확인하고 귀행과 거래할 것을 약정합니다.

입금 지정 계좌	계좌번호	수수료 인출 지정 계좌	계좌번호	보관어음통장 사용인감
예금주		예금주		(인)

- 은행은 보관어음 등을 수탁, 보관, 입금, 반환함에 있어 '어음(수표) 수탁약정 약관' 상에 명시된 은행의 면책사유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은행은 수탁어음을 기일에 맞추어 교환제시하며, 동 대전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 은행은 수탁어음이 기재요건의 누락, 배서불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보관어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수수료는 수탁수수료 건당 2,000원, 반환수수료 건당 2,000원을 적용합니다.
- 수수료 인출계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수수료인출 계좌에서 통장과 청구서 없이 제수수료를 인출합니다.
- 수수료는 수탁 또는 반환시점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인고객에 한하여 일괄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과 상호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일자 : _____ 일 / 분기별 납부일자 : _____ 일)
- 은행에 보관중인 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최소 1영업일 전에 반환 요청한 후 실물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 은행과의 최종거래일(수탁, 입금, 반환)로부터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별도의 통보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거래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미지급 보관어음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반환 받겠습니다.
- 보관어음의 수탁 또는 반환, 부도어음 수령시에는 신고한 인감을 사용합니다.
- 본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수표) 수탁약정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만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내용과 '어음(수표) 수탁약정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충할 경우 본 약정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전산인자란>

(주)한국씨티은행 앞

DEA-347(2011.12.20)

(주)한국씨티은행



어음(수표) 수탁약정 약관

제 1 조 대상 어음(수표)

- ① 은행은 신용상태가 확실하고, 보관어음의 관리로 수신기여가 기대되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정되는 어음, 수표 및 제증서(이하 "어음"이라 함)"를 고객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제공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고객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정되는 어음" 이라 함은 기명식 어음인 경우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된 것을 의미하며, 배서가능한 기명식 또는 지시식 어음인 경우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되었거나 고객 앞으로 최후의 배서가 되어 있는 것 또는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제 2 조 어음의 보관 및 반환

- ①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음을 보관하며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은행자신이 권리자인 어음이나 수표의 보관을 위하여 은행이 통상 기울이는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 ③ 은행은 고객의 어음 반환요청이 있거나 본 약관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관중인 어음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조 해지

- ① 어음의 수탁 거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 ② 최종거래일(어음의 수탁, 입금, 반환거래)로부터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별도의 통보없이 본 약정을 해지한다.

제 4 조 면책

- ①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고객이 미리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조, 변조 또는 서명감이나 인감의 도용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내란, 폭동, 화재, 홍수, 폭발, 천재지변, 교통·통신의 두절, 컴퓨터시스템의 고장, 정부당국의 조치, 법령의 변경, 전자 통신, 무선, 전신, 우편 또는 배달과정에서의 장애·오류 또는 지연, 서울어음교환소, 거래은행, 우체국 또는 통신기관이나 배달 또는 택배회사의 파업 또는 그 직원의 업무 장애, 실수, 지연 또는 기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고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③ 고객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입은 모든 손해, 손실,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 포함. 단, 고객과 은행 간의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함) 및 그와 관련된 이의제기 또는 법적절차로부터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을 은행에 보상 하기로 한다.

제 5 조 기타

- ①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은행과 고객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의한 어음의 교부 및 반환 등은 은행의 영업시간(통상의 대고객 업무시간을 의미함)내에 은행의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 ② 어음 수탁 및 반환에 따른 제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하도록 한다.
- ③ 본 약관은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작성된다. 한글본과 영어본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